

동의과학대학교학칙

제정일자 1979.03.01
개정일자 2018.03.01
소관부서 기획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동의과학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학사운영·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열린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본 대학교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국가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 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 발전에 필요한 전문 기술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명칭) 본 대학교는 동의과학대학교(東義科學大學校)라 한다.

제4조(위치) 본 대학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지로54(전포동)에 둔다.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본 대학교에 두는 계열 및 학과의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 의하여 별도 입학하는 학생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03.01.>

구분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구분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학과 및 계열	주간	야간		학과 및 계열	주간	야간
공학	건축계열 - 건축전공 - 실내건축전공	90		인문사회	경영정보계열 - 산업경영전공 - 유통물류전공	46	
	기계계열 - 기계설계전공 - 금형설계전공 - 조선해양전공	210	10		경찰경호행정계열 - 경찰전공 - 공무원양성전공 - 경호보안전공	105	
	자동차계열 - 자동차정비검사전공 - 자동차설계생산전공	185	20		국제관광계열 - 관광중국어전공 - 관광일본어전공 - 호텔관광서비스전공	150 (30) (30) (90)	
	전기과	160			부동산경영과	36	
	전자과	90			사회복지과	80	
	전자통신과	55			유아교육과(3년제)	70	
	컴퓨터정보과	70			항공서비스과	40	
	토목과	30	10		사회체육과	53	
	화학공업과	90			산업디자인과	70	
보건	간호학과(4년제)	80		자연과학	미용계열 - 피부미용전공 - 헤어뷰티전공	90 (30) (60)	
	물리치료과(3년제)	40			식품영양조리계열 - 식품영양전공 - 호텔외식조리전공	110	
	방사선과(3년제)	40			총 계	2,210	40
	응급구조과(3년제)	40					
	임상병리과(3년제)	50					
	약재자원과	40					
	의무행정과	90					

제6조(계약에 의한 설치학과) ① 본 대학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모집인원은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이내로 하며,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③ 계약학과의 신입생 선발방법 및 학사관리, 학점이수, 학점인정, 수업, 성적평가, 졸업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1.01.>

④ 계약학과로 운영되는 일학습병행제 전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7.11.01.>

제7조(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① 「고등교육법」 제5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의2에 의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본 대학교에 두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③ 입학 자격은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관련학과 졸업한 사람으로 한다.

④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갖춘 사람은 졸업자격을 부여하고 별지 제 4호서식의 학위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⑤ 전공심화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공학기술교육인증 학위과정) ① 본 대학교에는 공학기술교육인증 학위과정(이하 “인증학위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인증학위과정은 전문학사과정 설치학과에 둔다.

② 인증학위과정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교 내 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인증학위과정이 설치된 학과 및 수여 학위명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계열/학과의 개설 및 통·폐합) 학과의 신규개설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계열/학과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조(산학협력단) ① 본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산학협력단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은 총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특수법인으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의 명칭은 동의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 또는 별도의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2장 직 제

제11조(교직원) ① 본 대학교에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교원과 사무직원 및 조교를 둔다.

② 총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겸임교원, 초빙교원, 외래교원, 강의전담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강의전담교원 : 연구 및 산학협력에 부담없이 교육 지도에만 전담하는 교원
2. 산학협력중점교원 : 산업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 취업지원 활동을 중점 추진하는 교원
3. 겸임교원 : 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초빙교원 : 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임용할 수 있다.
5. 외래교원 :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사람

③ 기타, 교육운영상 필요한 사람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교직원의 임무) ①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② 교원은 교육과 연구에 성실히 임하며, 학생 지도와 사회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업무를 담당한다.

④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제13조(교원 재임용 심사) ① 본 대학교 전임교원(비 정년제 전임교원은 제외한다)의 임용기간 또는 근무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그 기간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재임용·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1. 학생교육에 관한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사항
4. 교내·외 봉사에 관한사항

② 재임용·재계약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4조(조직) ① 본 대학교에는 교무처, 학생복지처, 기획처, 입학홍보처, 산학협력단, 사무처를 두며, 기타 필요한 부서를 둔다. <개정 2018.01.01.>

② 각 처·단에 처·단장은 부교수 이상으로 보하고,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한다.

③ 교무처·학생복지처·기획처·입학홍보처·산학협력단에는 부처장·부단장을 둘 수 있

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01.01.>

④ 각 처·단의 사무 분장 및 운영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3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15조(수업연한) ① 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2년, 3년, 4년으로 한다.

② 유아교육과, 임상병리과, 방사선과, 물리치료과, 응급구조과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하고, 간호학과와 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③ 자동차계열 자동차설계생산전공 유니테크 과정의 수업연한은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7.11.01.> <개정 2018.03.01.>

제16조(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4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17조(학년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8조(학기) ① 학기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하되, 2주(14일)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학기개시일 이전에 개강할 수 있다.

1.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2.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절학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계절학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9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20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하며, 정기휴업 일은 다음과 같다.

1. 국정공휴일

2. 일요일

3. 학원설립일 : 10월 22일

② 하계방학·동계방학기간은 매년도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부득이한 경우 휴업 일에도 수업을 할 수 있다.

제21조(임시휴업) 총장은 비상재해 등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제5장 입 학

제22조(입학시기) 입학(재입학, 편입학 포함)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28일) 이내로 한다.

제23조(입학자격)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제24조(입학지원절차) 입학 지원 절차는 모집 시에 따로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25조(입학전형) 입학 전형은 매 학년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문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26조(대학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①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 ①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② 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관리에 있어 주요사항을 계획·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에 따른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입학허가) 입학허가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제30조(입학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출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사람
2. 이중학적을 가진 사람

3. 입학 모집요강에 정한 입학취소 요건 해당되는 사람

제31조(산업체위탁교육) ① 고등학교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업체에서 근무 중인 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위탁받은 때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내·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1.0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교육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 및 자격기준, 위탁교육의 경비 납부방법,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산업체의 시설 및 교원자격이 있는 사람을 활용,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1.01.>

③ 산업체위탁교육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2조(협약학과) ①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전문계고·전문대학·산업체·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공동으로 인력을 양성하는 산학취업약정제학과(협약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

② 협약학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편입학·재입학 및 전과

제33조(편입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일정수준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사람에 한하여 편입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7.11.01.>

1. 국내·외의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개정 2017.11.01.>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3.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② 편입학 시기에 따라 학점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11.01.>

1. 1학년 2학기 편입은 전문대학 졸업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2. 2학년 1학기 편입은 35학점 이상 취득자
3. 3학년 1학기 편입은 70학점 이상 취득자

③ 편입학은 모집단위별로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정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④ 기타 편입학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재입학) ① 본 대학교에 재적하였던 사람으로서 자퇴 또는 제적된 사람에 대하여는 5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계열/학과장 추천에 의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동일 계열

및 학과에 한한다.

④ 재입학한 학생은 재입학 당해 연도 교육과정에 따른다.

제35조(전과) ① 전과는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초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산업체위탁교육으로 입학한 사람은 전과를 불허한다.

② 전과의 계열/학과별 입학정원은 전입과 기준으로 입학정원의 30% 이내로 한다.

③ 전과의 계열/학과별 전출정원은 전출과 기준으로 입학정원의 30% 이내로 한다.

④ 전과한 사람의 이미 취득한 학점은 전입과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기타 전과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장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36조(휴학) ① 질병, 병역의무, 임신·출산·육아, 창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② 휴학기간은 1년 단위를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 중 5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휴학은 군 휴학, 일반휴학으로 구분한다.

1. 군휴학 : 병역 의무로 인한 휴학으로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일반휴학 : 질병, 임신·출산·육아, 창업, 해외연수,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반휴학은 병·의원 전문의(한 의사 포함)진단서, 진단서(임신·출산), 가족관계 증명서(육아), 연수허가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병역의무로 인한 군 휴학자와 질병으로 인한 휴학자는 수업일수 4분의 3이상 출석한 경우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⑤ 학기 개시일 이전에 휴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휴학할 수 있다.

제37조(복학) ① 휴학한 사람은 휴학기간이 만료된 다음 학기 등록기간에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군복무로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복학은 학기 개시 후 4주(28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제38조(자퇴) ① 본인의 질병, 사망, 실종,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퇴학(이하 “자퇴”라 한다)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호자 연서로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자퇴한 사람은 학적을 상실한다.

제39조(제적) ①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 처분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4주(28일)가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사람
 2. 무 계출 결석 4주를 초과한 사람
 3. 타교에 입학한 사람
 4. 정당한 이유 없이 매 학기 소정기한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
- ②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장 교과 및 수업

제40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한다.

- ② 전문교과는 필수와 선택으로 나누며, 각 계열 및 학과별 교육과정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현장실습은 전문교과의 선택으로 하여야 하나 학과의 사정에 따라 필수로 할 수 있다.
- ③ 입학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은 졸업 시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적이 변동된 사람은 신규허가 학기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④ 인증 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1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과,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른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학위의 수여는 「고등교육법」 제35조 및 제50조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내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하는 다른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③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2조(학점 이수) ①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학생은 매학기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하지 못한다. 다만, 총장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③ 제40조제2항에 의한 현장실습 학점은 1학점 이상으로 하되, 현장실습의 방법, 기간 및 학점기준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3조(학점인정) ①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행한 교육·연구 또는 실습 등은

졸업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병역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복무중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학기당 3학점 이내 최대 6학점 이내로 취득할 수 있다.
- ③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 적용범위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4조(수업)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사이버수업, 방송·통신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며, 세부운영 방법은 따로 정한다.

- ② 매학기 개설 교과목은 입학 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총장이 공고한다.
- ③ 수업시간표는 강의 개시 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고한다.
- ④ 강좌는 09:00부터 23:00까지 개설·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⑤ 폐강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5조(타교생의 수업) 국내·외의 대학에서 재학중인 학생이 본교에서 수업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수학기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 등에 의한다.

제46조(집중수업) ①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학기 등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② 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7조(교원시간) ①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학기당 15주)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 ②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주당 9시간으로 한다. 다만, 보직교원·겸임교원·초빙교원 등의 책임시간은 따로 정한다.
- ③ 교원시간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8조(수강신청)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교육과정표, 강의시간표를 참고하여 다음 학기에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수강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9조(출석의무) 학생은 수강 신청한 전 교과목의 강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50조(출석인정) ① 학생의 징병검사, 예비군교육, 상고 및 기타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졸업예정학기에 취업한 자는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 ③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51조(시험) ①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기말에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학기 중 중간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시험은 주·객관식 시험을 병용한 필답고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실기, 실습, 과제물작성 등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 ③ 각 교과목 총 수업 시간수의 4분의 1이상을 결석한 사람은 당해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당해 교과목의 학점을 미 취득(F)으로 처리한다.

제52조(추가시험)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때에는 시험개시 전에 그 사유를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허가된 사람에 대해서는 과목담당교수가 추가시험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 ② 제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가시험 성적은 B⁺급까지 인정할 수 있다.
- ③ 추가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3조(성적)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학습태도,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 급	배 점	평 점
A ⁺	100~95	4.5
A ⁰	94~90	4.0
B ⁺	89~85	3.5
B ⁰	84~80	3.0
C ⁺	79~75	2.5
C ⁰	74~70	2.0
D ⁺	69~65	1.5
D ⁰	64~60	1.0
F	59이하	0
P		불 계

- ② 교과목 성적이 D⁰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 ③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수 없는 교과목 등에 있어서는 P등급으로 한다. 이때, 취득 학점은 인정하고 평점평균 산출에서는 제외한다.
- ④ 수강승인을 받고도 수강하지 아니한 과목의 성적은 미 취득(F)으로 처리한다.

제54조(성적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성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
 2. 중복 수강신청 후 취득한 성적
 3. 출석 미달과목의 성적
 4. 성적 과오 또는 부정행위로 취득한 성적
- ② 취소한 성적은 반복 할 수 없다.

제55조(학사경고) 성적평가 결과 당해학기 15학점 미만이고 평균평점이 1.5미만 취득한 사람에게 학사경고를 한다.

- 제56조(유급)** ① 졸업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은 졸업미달 학점만큼 재수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졸업학점이 미달된 경우는 등록금에관한규정에 따른다.
- ③ 기타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57조(졸업 및 학위수여)** ①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다음 각 항의 졸업요건을 갖춘 사람은 졸업자격을 부여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학위증서를 수여하며, 학위명은 별표3과 같고, 학위증서에는 교과과정상의 전공을 표기할 수 있다.
- ② 1997년도 이전에 졸업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서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③ 졸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은 80학점(3년제 과정은 120학점, 4년제 과정은 14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 ④ 2006학년도 입학까지는 졸업학점 중 필수교과와 전공 45학점(3년제 과정은 75학점), 교양교과 6학점(3년제 과정은 9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⑤ 2007학년도 입학부터는 졸업학점 중 필수교과와 전공 45학점(3년제 과정은 75학점), 교양교과 9학점(3년제 과정은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⑥ 2012학년도 입학부터는 졸업학점 중 필수교과와 전공 45학점(3년제 과정은 75학점, 4년제 과정 100학점), 교양교과 14학점(3년제 과정은 16학점, 4년제 과정은 2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⑦ 2014학년도 입학부터는 졸업학점 중 필수교과와 전공54학점(3년제 과정은 84학점, 4년제 과정 100학점), 교양교과 14학점(3년제 과정은 16학점, 4년제 과정은 2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⑧ 2018학년도부터 입학한 산업체위탁교육생 별도반의 졸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은 7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신설 2018.03.01.>
- ⑨ 외국대학과의 협약에 의해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⑩ 인증 학위과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이 충족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해당하는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58조(명예학위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거나 본 대학교의 명예와 대학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9조(학위수여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학위를 받은 사람이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50조(「고등교육법」 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문학사학위
 2.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사학위
 ② 제58조에 따른 명예학위를 받은 사람이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60조(후기졸업)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1. 졸업학점이 미달되는 사람
2. 제57조제4항, 제5항, 제6항 및 제7항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

제61조(수료)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졸업사정에서 탈락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학년 수료 : 40학점 이상
2. 2학년 수료 : 70학점 이상 <개정 2018.03.01.>
3. 3학년 수료 : 120학점 이상
4. 4학년 수료 : 140학점 이상

제10장 평생교육

제62조(교육과정의 연계운영) ①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성화(전문계)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 산업체 등과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계교육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3조(공개강좌) ① 본 대학교 학생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4조(시간제등록제) ① 본 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한 사

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제등록생을 모집할 수 있다.

- ② 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12학점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시간제등록생의 선발방법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④ 본 대학교의 학기별 시간제 등록생 모집인원은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이내로 한다.

제65조(학점은행제) ① 총장은 평생학습진흥을 위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학습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위수여 요건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을 받은 사람이 본 대학교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교양 15학점이상, 전공 45학점이상, 총 8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
3.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48학점(다만, 전문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다른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할 경우 36학점) 이상인 사람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의한 학습과정 이수 및 동조 제2항제3호에 의한 시간제 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이 총 18학점 이상인 사람. 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학습과정 이수, 교육과정 이수 및 시간제 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은 연간 42학점(학기당 24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 기타 학점은행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5. 본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및 디지털평생학습원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인정한다.
6.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매학기 모집인원, 전형방법, 등록, 교육과정 및 등록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점은행제 학사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학위를 수여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 학위의 종별 및 전공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한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되, 표준교육과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학위종별 및 전공에 따른다.

⑤ 기타 학점은행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6조(비정규 특별과정 운영) ① 본 대학교에는 1년 이내의 비정규 특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비정규 특별과정은 본 대학교에 설치된 계열 및 학과와 유사한 분야에 한하여 설

치한다.

③ 비정규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장 학생활동

제67조(학생자치기구) ① 본 대학교의 전통과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자치 활동을 통하여 진리탐구와 창조적이고 도전적 지성을 겸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학생 자치기구인 동의과학대학교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본 대학교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총학생회 회원이 되며, 휴학이나 제적·자퇴와 동시에 회원신분을 상실한다.

③ 총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8조(학생의 의무) ① 학생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② 총학생회 등 학생단체는 집회 및 행사를 주최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외 10명 이상의 집회
2. 교·내외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의 후원 요청 또는 시상요청
4. 외부 인사의 학내 초청

④ 학생회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원(지도위원)이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9조(학생단체의 조직)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0조(학생지도) ① 총장은 매년 학생지도 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원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 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생회 활동을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학생지도위원회 운

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1조(대학 내 집단 활동 운영대책) ① 대학은 학생 집단 활동 시 담당 지도교수를 책임자로 지정하며, 인권침해 사고발생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여하고, 사고 발생 시 처벌과 관련 세부사항은 제규정에 의한다.
② 집단 활동이란 대학의 동아리·학생회·학과·대학전체가 주관이 되어 학생을 소집하여 일정한 행위(OT, MT, 환영회, 축제, 체육대회, 행사 등)를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72조(처벌) 제68조를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생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총장이 직접 징계할 수 있다.

제12장 규율 및 상벌

제73조(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여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써 장차 전문기술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토록 한다.

제74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5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본 대학교 학칙을 위반한 사람.
 2.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사람으로서 개전의 가망이 없는 사람.
 3.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사람.
- ②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모든 징계에 대상되는 사람은 징계 심의시 회의에 출두하여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할 수 있다.

제76조(성희롱 예방)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본 대학교의 구성원을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조직을 신설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장 등록금

제77조(등록금) ①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에 수업료 등 소정의 납입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금은 결석·정학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78조(등록금의 면제)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 및 보훈대상 자녀에 대하여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79조(등록금의 반환) ① 납부한 등록금 중 대학교 등록금에관한규정 제6조에 의한 반환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기타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장 장학금

제80조(장학금) ① 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거나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휴학,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자퇴하는 경우 기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③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장 대학평의위원회 및 제위원회

제81조(대학평의위원회) ① 본 대학교의 기본적인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평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2조(교무위원회) ① 본 대학교의 교육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3조(기획위원회) ① 본 대학교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계획수립과 운영 및 제규정의 제정, 개정·폐지 등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해 기획위원회를 둔다.

② 기획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4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

원회를 둔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직원 3명, 학생 3명, 동창회위원 1명, 관련전문가 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그 밖에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5조(제위원회) ① 본 대학교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장 학칙 제·개정 절차

제86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학칙을 제·개정을 할 경우에는 제·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7조(공고기간) 학칙 제·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11.01.>

제8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본 대학교의 교직원은 공고된 제·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당해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9조(심의) 사전예고 절차를 거친 제·개정안은 학칙에 따라 대학평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0조(공포절차 및 공포) 제반학칙의 공포는 대학평의위원회 심의를 마친 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이 공포한다.

제17장 부속기관, 부설교육기관 및 부속 연구소

제91조(부속기관) ① 본 대학교의 부속기관에는 학술정보원, DIT교수학습개발센터를 두며, 그 외에 부속기관의 설치에 본 대학교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② 학술정보원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세부적인 사항을 학술정보부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92조(부설기관) 본 대학교의 부설기관은 평생교육원, 디지털평생학습원을 두며, 그 외 부설기관의 설치는 본 대학교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제18장 삭제 <2017.11.01.>

제93조 삭제 <2017.11.01.>

제94조 삭제 <2017.11.01.>

제95조 삭제 <2017.11.01.>

제96조 삭제 <2017.11.01.>

제97조 삭제 <2017.11.01.>

제19장 자체평가

제98조(자체평가의 정의) “자체평가”란 본 대학교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99조(자체평가의 실시) ① 총장은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와 본 대학교의 교육·연구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연도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00조(자체평가위원회 등) ① 총장은 자체평가의 기획·운영·조정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와 자체평가를 담당하는 조직·인력을 둔다.

②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01조(평가결과의 공시) 총장은 자체평가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20장 장애학생 및 다문화가족학생

제102조(용어의 정의) ① “장애학생”이란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학생을 말한다.

② “다문화가족학생”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구성원 중 본 대학교에 입학한 사람을 말한다.

제103조(차별금지) 장애학생 및 다문화가족학생에 대해 학생권, 학습권, 생활복지권 등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또한 대학교의 책임, 교수·학습 및 상담과 취업지도, 편의시설, 보호조치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04조(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① 장애학생복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서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대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를 둔다.

②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장 보 칙

제105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동의공업전문학교는 재학생(휴학자 포함, 이하 같다)이 졸업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휴학생이 복학할 수 있는 기간은 83학년도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재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8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재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 및 제24조제

5항은 198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6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졸업자격고시 합격자 처리) 1981학년도 이후 198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중 전문대학 전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예정자로서 졸업정원에서 제외된 자가 전문대학 졸업자격고사에 합격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졸업 정원을 입학 정원으로 전환함에 따른 경과 조치) 1981학년도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입학한 자중 1988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 제16조, 제16조의2, 제27조, 제28조 및 제31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 학과가 신설, 통합 또는 개편된 경우에는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8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신설, 통합 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3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명칭 변경으로 인한 경과조치) 학과 명칭이 변경된 공업디자인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5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산업디자인과의 소속으로 본다.

제3조(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학칙 제22조제1항은 199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 학칙 시행 이전의 입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동의공업전문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동의공업대학의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명칭 변경으로 인한 경과조치) ① 학과 명칭이 변경된 영상정보처리과, 공업경영과, 환경공업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영상정보과, 산업시스템경영학과, 환경시스템공학과에 소속으로 본다.
② 아래의 학과에 소속된 지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해당 계열의 소속으로 본다.

기계설계과, 금형설계과, 컴퓨터응용설계과	➡	기계시스템계열
전자과, 전기과	➡	전기전자계열
전자계산과, 사무자동화과	➡	컴퓨터정보계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명칭 변경으로 인한 경과조치) 학과 명칭이 변경된 전자통신과, 식품공업과, 건축장식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정보통신과, 식품생명과학과, 실내건축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명칭 변경으로 인한 경과조치) 학과 명칭이 변경된 산업시스템경영학과, 환경시스템공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산업시스템경영과, 환경정보시스템과의 소속으로 본다.

제3조(수업연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년제 과정이 3년제 과정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2

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자의 신분, 학위취득 등 학사운영에 대하여는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면개정 2003.5.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명변경으로 인한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동의공업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동의과학대학의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총장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개정(법률 제9356호)과 관련하여 법률 공포일(2009.1.30.)부터 ‘학장’을 ‘총장’으로 하고, ‘부학장’을 ‘부총장’으로 일괄 개정·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명변경으로 인한 경과조치) ① 교육과학기술부 인가 및 정관 개정에 따라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동의과학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동의과학대학교의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명칭 변경에 따라 디자인계열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6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산업디자인과 소속으로 본다.

부 칙(전면개정 2017.3.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의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통합에 따라 건축과, 실내건축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건축계열 소속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명칭 변경으로 인한 경과조치) 학과 명칭이 변경된 경영정보계열, 정보통신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경영계열, 전자통신과의 소속으로 본다.

(별표 1) <개정 2017.11.01.>

- 계약학과 및 입학정원

학 과 명	수업연한	입학정원
사회복지서비스과	2	60
헤어디자인과	2	50
전기에너지과	2	50
융합기계과	2	60
IoT융합전자과	2	50
외식조리과	2	50
총 계		320

(별표 2)

-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학 과 명	수업연한	입 학 정 원		
		주간	야간	계
부동산경영학과	2	0	20	20
토목공학과	2	0	20	20
자동차공학과	2	0	15	15
약재자원학과	2	0	15	15
유아교육학과	1	0	20	20
방사선학과	1	0	30	30
임상병리학과	1	0	20	20
물리치료학과	1	0	20	20
산업보건응급구조학과	1	0	20	20
총 계		0	180	180

(별표 3)

- 전문학사 및 학사학위의 종별

종 별	해 당 학 과 및 계열	비고
공업전문학사	건축과, 토목과, 정보통신과, 전기과, 자동차계열, 실내건축과, 컴퓨터정보과, 기계계열, 화학공업과, 전자과,	
디자인전문학사	산업디자인과	
식품전문학사	식품영양조리계열	
항공운항전문학사	항공서비스과	
교육전문학사	유아교육과	
사회복지전문학사	사회복지과	
관광전문학사	국제관광계열	
경영전문학사	부동산경영과, 경영정보계열	
법학전문학사	경찰경호행정계열	
미용전문학사	미용계열	
체육전문학사	사회체육과	
보건전문학사	임상병리과, 의무행정과, 약재자원과, 방사선과, 물리치료과, 응급구조과	
전기기술전문학사	전기과	공학인증
기계기술전문학사	기계계열	공학인증
전자기술전문학사	전자과	공학인증
화학공업기술전문학사	화학공업과	공학인증
실내건축기술전문학사	실내건축과	공학인증
건축기술전문학사	건축과	공학인증
자동차기계기술전문학사	자동차계열	공학인증
정보통신기술전문학사	정보통신과	공학인증
컴퓨터정보기술전문학사	컴퓨터정보과	공학인증
토목기술전문학사	토목과	공학인증
간호학사	간호학과	

- 전공심화과정 학사학위의 종별

종 별	해 당 학 과 및 계열	비고
공 학 사	토목공학과, 자동차공학과	
보건학사	방사선학과, 물리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산업보건응급구조학과, 약재자원학과	
교육학사	유아교육학과	
경영학사	부동산경영학과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학 위 증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학년도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여
(전문/공/이) 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동 의 과 학 대 학 교 총 장 김 영 도

학위등록번호 : 동의-0000-0000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수료증서

성 명:

생 년 월 일:

학 과(계열):

전 공:

위 사람은 본 대학교 학년 소정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동의과학대학교총장 김 영 도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학 위 증 서

성 명:

생 년 월 일:

위 사람은 학년도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여
(00기술전문) 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동 의 과 학 대 학 교 총 장 김 영 도

학위등록번호 : 동의-0000-0000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학 위 증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학년도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여
() 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동 의 과 학 대 학 교 총 장 김 영 도

학위등록번호 : 동의-0000-0000

(별지 제5호서식)

제 0000-학점000 호

학 위 증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전 공 :

위 사람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학칙」 제6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학사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동 의 과 학 대 학 교 총 장 김 영 도

학위번호 : 동의과학대-학점-0000-000